의안번호	제 246 호
의 결	2008년 7월 일
연월일	(제 273 회)

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발 의 자	정윤숙 의원외 7인
발의연월일	2008년 6월 30일

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정윤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246 번 호

발의연월일 : 2008. 6. 30.

발 의 자 : 정유숙·민경환·이영복

이규완 이대원 박종갑 장주식·권광택(8인)

1. 제안이유

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 본적인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여성기업의 적용대상을 도내에 소재한 여성기업에 한하여 적용하기로 정함(안 제3조).
- 나. 여성기업 지원의 제한(안 제4조)
 - 1) 여성기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여성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 - 2) 지원 제한 기준의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함
- 다.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·입지지원·자금· 인력·정보·기술·판로·협력네트워크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도지 사의 책무를 정함(안 제5조).
- 라. 도지사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연도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·

시행하도록 함(안 제6조).

- 마.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(안 제7조, 안 제8조)
 - 1)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 - 2)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, 당연직 위원은 경제통상국장, 회계과장으로 함.
 - 3)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
- 바. 도지사 및 투자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(안 제9조).
- 사.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제품, 신기술도입 및 경영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10조).
- 아.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·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11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관련부서 협의 :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와 협의되었음

라. 규제관련 사항: 규제신설 · 폐지는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에 따라 여성 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여성기업"이란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.
- 2. "투자기관"이란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충청북도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는 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내에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지원의 제한) ① 여성기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같은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② 제1항에 의한 지원 제한 기준과 방법 등은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가 따로 정한다.

제5조(도지사의 책무)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 하여 창업·입지지원·자금·인력·정보·기술·판로·협력네트워크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제6조(계획의 수립 및 시행) 도지사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연도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7조(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) ①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여성기업지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- 2.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
- 제8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.
 -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통상국장, 회계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.
 - 1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
 - 2.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3조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에서 추천하는 자 1명
 - 3. 여성기업인 대표
 - 4. 경제관련 단체 임직원
 - 5. 그 밖에 관련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 -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

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,

-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 는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.
-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9조(지원사항) ① 도지사 및 투자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「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2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제품 구 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 설정시 우대
 - 2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제29조의 공동 계약시 참여 우대
 - 3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제9조의 계약 의 방법 중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 우대
 - 4. 「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제6조의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시 우대
 - 5. 그 밖에 도 및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기업과 관련된 시책추진에

있어서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시책 우대

- ②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
- 2. 여성기업인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
- 3.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
- 제10조(여성기업 활동 촉진)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제품, 신기술 도입 및 경영지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성기업, 단체는 미리 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11조(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·지도)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계약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 다.
 -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도지사가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시 명부에 등재하여야한다.
 - ③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·군 및 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.
- 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

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